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의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 신규 설정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등 5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

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제13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이수 : 2022년 1월 1일

4. 제27조의5에 따른 체력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2022년 1월 1일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0. 제27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27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12. 제8조, 제23조 및 별표 4, 별표 6에 따른 체육시설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시설·안전 위생기준: 2022년 1월 1일

13.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2022년 1월 1일

14.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골프장 시설 안전 기준 관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2022년 1월 1일

15.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수영장 시설 안전 기준 관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2022년 1월 1일

제5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2조에 따른 유원시설 업자의 준수사항 : 2022년 1월 1일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 2022년 1월 1일

제7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6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 2020년 1월 1일

제7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4항제3의3 및 제3의4에 따른 안전서류 확인 : 2022년 1월 1일

제7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 2022년 1월 1일

제7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의2 및 별표10의 2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구조의 안전·위생기준 : 2022년 1월 1일

제7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7조의6 및 별표 17의5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 2022년 1월 1일

제73조제3항,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 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 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생략)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3조에 따른 연수과정의 이수 : 2022년 1월 1일
<신 설>	4. 제27조의5에 따른 체력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2022년 1월 1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 제27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u><신 설></u>	11. 제27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u><신 설></u>	12. 제8조, 제23조 및 별표 4, 별표 6에 따른 체육시설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시설·안전 위생 기준: 2022년 1월 1일
<u><신 설></u>	13.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

<u><신 설></u>	<u>시설업 시설기준: 2022년 1월 1일</u> 14.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골프장
<u><신 설></u>	<u>시설 안전 기준 관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2022년 1월 1일</u> 15.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수영장
	<u>시설 안전 기준 관련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2022년 1월 1일</u>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3조(규제의 재검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제25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그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3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의2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 2014년 1월 1일	<삭제>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신설)	8. 제42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9. (신설)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2022년 1월 1일
10. (신설)	10. 제6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2020년 1월 1일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설)	1. 제2조제4항제3의3 및 제3의4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2. (신설)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확인 서류: 2022년 1월 1일
3. (신설)	3. 제39조의2 및 별표10의 2에 따른 물놀이형 유기사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 2022년 1월 1일
4. (신설)	4. 제57조의6 및 별표 17의5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2022년 1월 1일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③ <삭제>

<u>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 2. (생 략)</u>	<u>1. ~ 2. <삭 제></u>
---	-----------------------------------